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8. 10. 1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 查 經 過

- 가. 제출일자 : 2008년 10월 6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10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8년 10월 13일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 설명자 : 도시환경국장 박정희)

가. 폐 지 이 유

-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 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 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.
- 다만,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리를 위하여 2009.1.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자 함.(안 부칙 제1조·제2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전문위원 : 이남식)

-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 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는 적절한 조치이며, 조례 시행 시기를 2009년 1월 1일로 하는 안 부칙 제1조는 기반시설 환급 조치 등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원활한 정리를 위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審査結課 : 原案 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6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8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 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폐지.(본칙)
- 나.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부터 정함.(부칙 제1조)
- 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·의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함.(부칙 제2조제1항)
- 라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08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회계에 귀속됨.(부칙 제2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(2008.03.28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홍보과와 협의되었음.
- 라. 기 타
 - (1) 입법예고결과(2008. 8. 28 ~ 9.17) : 의견없음
 - (2) 규제심사 : 규제심사대상 사무 없음.

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·의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08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회계에 귀속된다.